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34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구산학과), 02-970-9133

전부개정 2014. 2. 27.

개정 2015. 5. 20.

타규정개정 2015. 6. 5.

개정 2017. 3. 2.

개정 2022. 7. 15.

개정 2022. 12. 16.

개정 2023. 2.17.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교수의 정의) "연구교수"란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 정기간 동안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2. 7. 15.〉

- 제3조(연구교수의 구분)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연구년제 연구교수 : 일정 기간 동안 교육, 학생지도 등의 의무를 면제하여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창업 포함)만을 전담하는 연구교수 〈개정 2022. 7. 15.〉
 - 2. 해외파견 연구교수 : 일정기간 동안 외국의 대학 등에 파견되어 학문연구 만을 전담하는 연구교수
 - 3.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 일정기간 동안 외국의 대학 등에 파견되어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연구교수로서 연구에 따른 체류비용을 국가기관·지 방자치단체·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그 밖의 법인 등에서 전액 부담하는 연구교수
- 제4조(연구교수 선정 원칙) ① 연구교수는 매학년도 해당 학부(과) 재직교원(전문 대학원의 경우 전문대학원 재직교원)의 20퍼센트(소수점 이하 절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학부(과) 재직교원(전문대학원의 경우 전문대학원 재직교원)의 수를 5로 나누었을 때 발생하는 소수의 연도별합이 0.5 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 기간의 연구교수 1명을, 소수의 연도별합이 1 이상일 경우에는 1년 기간의 연구교수 1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를예시하면 별표 1과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수의 연도별 합은 최대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6 개월 기간의 연구교수 1명을 추가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의 소수의 합에서 0.5를 감하고, 1년 기간의 연구교수 1명을 추가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의 소수의 합에서 1을 감하여 다시 기산하며, 이를 예시하면 별표 1과 같다.
- ④ 연구교수 선정 시 의무 재직기간 충족 여부는 연구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2. 7. 15.〉

제2장 연구년제 연구교수

- 제5조(연구년제 연구교수의 선정인원) ①연구년제 연구교수는 각 단과대학과 전 문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 ② 연구년제 연구교수의 선정인원은 매학년도를 기준으로 각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6조(연구년제 연구교수의 연구기간)** ① 연구년제 연구교수의 연구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상 필요하고 강의에 지장이 없을 경우,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학기 중에는 연구년제 연구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
- 제7조(연구년제 연구교수의 선정 대상) ① 연구년제 연구교수 선정 대상자는 연구년제 연구교수 임용일을 기준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교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특별연구년제 연구교수로 선정할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5조 및 제8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7, 15.〉
 - 1. 최근 2년간 우수 연구교수 시상 교원
 - 2. 대학 재정 확보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으로 총장이 추천하는 자
 - 3. 기타 대학 발전에 공이 큰 교원으로 총장이 추천하는 자
- 제8조(연구년제 연구교수의 선정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구년제 연구교수로 선정될 수 없다.

- 1. 휴직 중인 사람
- 2. 연구년제 연구교수·해외파견 연구교수·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임용기간 만료 후 6년 이하인 사람. 당회 신청 연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구교수 임용기간 만료 후 3년 이하인 사람. 단, ST 학기제 시행으로인한 상기 기간 미 경과 시 연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예외로 할 수 있음 (개정 2022. 7. 15., 2023. 2. 17.)
- 3. 연구기간 종료 후 정년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개정 2017.3.2., 2022. 7. 15.〉
-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른 책임강의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원. 다만, 책임강의시간 미달 시간을 책임강의시간 미달 학기의 다음 학기에 보충한 교원 제외
- 5. 연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
- 제9조(연구년제 연구교수의 선정 시기) 연구년제 연구교수 선정 시기는 매년 2월과 8월에 선정하며, 선정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 7. 15.〉 제10조(연구년제 연구교수 선정절차) ① 연구년제 연구교수가 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 학기 시작 2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창업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이하 창업 연구년제 연구교수)은 창업지원단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2. 7. 15.〉
 - 1. 연구년제 연구교수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2. 연구년제 연구교수 연구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3. 연구실적 목록 1부(별지 제4호서식)
 - 4. 서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창업규정」제14조제3항에 따른 약정서(창업 연구년제 연구교수에 한함)
- ② 대학(원)장 및 창업지원단장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연구년제 연구교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창업 연구년제 연구교수 신청자를 포함한 연구년제 연구교수 신청 인원이 제5조제2항의 연구교수 선정인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학문전담 연구교수가 우선한다. 〈개정 2022. 7. 15.〉
- ③ 연구년제 연구교수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 ④ 연구년제 연구교수, 해외파견 연구교수,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는 서로 중 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제11조(연구년제 연구교수의 의무) ① 연구년제 연구교수는 연구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 ② 연구년제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중에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연구년제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총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창업 연구년제 연구교수의 경우 교원창업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중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구년제 연구교수 활동보고서 1부(별지 제6호서식, 산업체 및 창업 연구 년제 연구교수는 제외)
 - 2. 산업체/창업 연구년제 연구교수 활동보고서 1부(별지 제7호서식, 산업체 및 창업 연구년제 연구교수에 한함)
 - 3. <삭제 2022. 7. 15.>

- 4. 산업체 근무확인서 1부(별지 제9호서식, 산업체에서 연구를 수행한 연구 교수에 한함)
- ④ 연구년제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논문접수증 또는 창업실적 유예사유를 제출한 경우 2년 이내)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 전까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1편 이상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연구년제 연구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 2. 12. 16.〉
 - 1.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번호)를 부여받은 국 내외 전문 학술저서(참고서, 편저, 번역서 등은 불인정)
 - 2.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4. SCI, SCIE, SSCI, A&HCI에 게재된 논문
 - 5. SCOPUS에 게재된 논문
 - 6. 제4호 및 제5호 이외의 국외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 7. 조형계열,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 및 창작분야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별표 3에서 정한 연구실적
 - 8. 교원창업심의위원회에서 연구교수 기간 전·후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창업활동성과물로 인정하는 수주, 매출, 고용, 투자유치 실적 〈신설 2022. 7. 15.〉
- ⑤ 연구년제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본교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 퇴직 시 지급받은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단, 중도퇴직 시 연구실적물의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는 본교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함의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3. 2., 2022. 7. 15., 2023. 2. 17.〉

- 제12조(연구년제 연구교수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년제 연구교수의 연구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교수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연구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제13조(연구년제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 등) ①연구년제 연구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6개월 이상(주 2일 이상 근무) 산업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년제 연구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간접비 계상 및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연구년제 연구교수의 연구지원비와 중복될 수 없다. 〈개정 2022. 7. 15.〉
 -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 거나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 1. 제11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연구기간 중에 질병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4. 연구활동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제14조(연구년제 연구교수 임용의 취소 등) ①총장은 연구년제 연구교수가 제11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연구교수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②연구년제 연구교수가 제11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본 교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해외파견 연구교수

- 제15조(해외파견 연구교수의 선정인원) ①해외파견 연구교수는 각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 ② 해외파견 연구교수의 선정인원은 매학년도를 기준으로 각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수의 3퍼센트(소수점 이하 절사) 이내로 한다. 다만, 전임교원 수의 3퍼센트가 1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파견 연구교수 3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16조(해외파견 연구교수의 연구기간) ① 해외파견 연구교수의 연구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상 필요하고 강의에 지장이 없을 경우,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학기 중에는 해외파견 연구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
- 제17조(해외파견 연구교수의 선정 대상) ① 해외파견 연구교수 선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외파견 연구교수 임용일을 기준으로 본교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교원
 - 2. 해외파견 연구교수 선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교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특별해외파견 연구교수로 선정할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7. 15.〉
 - 1. 최근 2년간 우수 연구교수 시상 교원

- 2. 대학 재정 확보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으로 총장이 추천하는 자
- 3. 기타 대학 발전에 공이 큰 교원으로 총장이 추천하는 자
- 제18조(해외파견 연구교수의 선정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해외파견 연구교수로 선정될 수 없다.
 - 1. 휴직 중인 사람
 - 2. 연구년제 연구교수·해외파견 연구교수·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임용기간 만료 후 6년 이하인 사람. 당회 신청 연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구교수 임용기간 만료 후 3년 이하인 사람. 단, ST 학기제 시행으로 인한 상기 기간 미 경과 시 연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예외로 할 수 있음 (개정 2022. 7. 15., 2023. 2. 17.)
 - 3. 연구기간 종료 후 정년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개정 2017.3.2., 2022. 7. 15.>
 -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른 책임강의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원. 다만, 책임강의시간 미달 시간을 책임강의시간 미달 학기의 다음 학기에 보충한 교원 제외
 - 5. 연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
- 제19조(해외파견 연구교수의 선정 시기) 해외파견 연구교수 선정 시기는 매년 2월과 8월에 선정하며, 선정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 7. 15.〉
- 제20조(해외파견 연구교수 선정절차) ① 해외파견 연구교수가 되고자 하는 교원 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 학기 시작 2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 1. 해외파견 연구교수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1호서식)

- 2. 연구실적 목록 1부(별지 제4호서식)
- 3. 해외파견 연구교수 연구계획서 1부(별지 제12호서식)
- 4. 서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② 대학(원)장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해외파견 연구교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 ③ 해외파견 연구교수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 ④ 연구년제 연구교수, 해외파견 연구교수,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는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제21조(해외파견 연구교수의 의무) ① 해외파견 연구교수는 연구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학문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해외파견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중에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해외파견 연구교수는 파견국 체재지에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체재지 도착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해외파견 연구교수는 파견국 체재지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파견국 체재지에 도착한 후, 3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해외파견 연구교수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귀국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 및 연구교수 연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8호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해외파견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논문접수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내)에 SCI·SCIE·SSCI·A&HCI에 게재된 논문 1편 이상을 총장에게 제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2편 이상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연구기간이 6개월 이내인 해외파견 연구교수의 경우에는 연구실적물 제출기한을 1년 이내(논문접수증을 제출한 경우 2년 이내)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1편 이상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16.>

- 1.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번호)를 부여받은 국 내외 전문 학술저서(참고서, 편저, 번역서 등은 불인정)
- 2.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4. SCOPUS에 게재된 논문
- 5. 제4호 이외의 국외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 6. 조형계열,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 및 창작분야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별표 3에서 정한 연구실적
- ⑦ 해외파견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본교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 퇴직 시 지급받은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단, 중도퇴직 시 연구실적물의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는 본교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함의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3. 2., 2022. 7. 15., 2023. 2. 17.〉
- 제22조(해외파견 연구교수 연구계획의 변경) 해외파견 연구교수의 연구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교수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연구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제23조(해외파견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 등) ①해외파견 연구교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원 1인당

1회에 한정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 1. 제21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2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연구기가 중에 질병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4. 연구활동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제24조(해외파견 연구교수 임용의 취소 등) ①총장은 해외파견 연구교수가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연구교수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②해외파견 연구교수가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본교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 제25조(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의 선정인원) ①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는 각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 ②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의 선정인원은 매학년도를 기준으로 각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수의 3퍼센트(소수점 이하 절사) 이내로 한다. 다만, 전임교원 수의 3퍼센트가 1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선발되었거나,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26조(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의 연구기간) ①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 의 연구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상 필요하고 강의에 지장이 없을 경우,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학기 중에는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
- 제27조(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의 선정 대상) ①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선정 대상자는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임용일을 기준으로 본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교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특별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25조 및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2022. 7. 15.〉
 - 1. 최근 2년간 우수 연구교수 시상 교원
 - 2. 대학 재정 확보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으로 총장이 추천하는 자
 - 3. 기타 대학 발전에 공이 큰 교원으로 총장이 추천하는 자
- 제28조(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의 선정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로 선정될 수 없다
 - 1. 휴직 중인 사람
 - 2. 연구년제 연구교수·해외파견 연구교수·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임용기간 만료 후 6년 이하인 사람. 당회 신청 연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구교수 임용기간 만료 후 3년 이하인 사람. 단, ST 학기제 시행으로 인한 상기 기간 미 경과 시 연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예외로 할 수 있음 〈개정 2022. 7. 15., 2023. 2. 17.〉
 - 3. 연구기간 종료 후 정년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개정 2017.3.2., 2022. 7. 15.>

-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른 책임강의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원. 다만, 책임강의시간 미달 시간을 책임강의시간 미달 학기의 다음 학기에 보충한 교원 제외
- 5.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그 밖의 법인 등으로부터 연구에 따른 체류비용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
- 6. 연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선발되었거나,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29조(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의 선정 시기)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선정 시기는 매년 2월과 8월에 선정하며, 선정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 7. 15.>
- 제30조(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선정절차) ①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가 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 학기 시작 2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 1.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6호서식)
 - 2. 연구실적 목록 1부(별지 제4호서식)
 - 3.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연구계획서 1부(별지 제17호서식)
 - 4. 서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② 대학(원)장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 ③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 ④ 연구년제 연구교수, 해외파견 연구교수,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는 서로 중 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제31조(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의 의무) ①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는 연구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학문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중에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는 파견국 체재지에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체재지 도착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는 파견국 체재지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중간 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파견국 체재지에 도착한 후, 3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별지 제1 4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귀국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재직연한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경우 1년 이내),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 전까지 SCI·SCIE·SSCI·A&HCI에 게재된 논문 1편 이상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및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2편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 1.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번호)를 부여받은 국 내외 전문 학술저서(참고서, 편저, 번역서 등은 불인정)
 - 2.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4. SCOPUS에 게재된 논문

- 5. 제4호 이외의 국외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 6. 조형계열,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분야 및 창작분야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 별표 3에서 정한 연구실적
- ⑦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본교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단, 중도퇴직 시 연구실적물의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 정 2017. 3. 2., 2022. 7. 15., 2023. 2. 17.>
- 제32조(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연구계획의 변경)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의 연구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교수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연구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제33조(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 등)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에게 연구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34조(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임용의 취소 등) ①총장은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가 제31조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연구교수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②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가 제31조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본교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201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년제 연구교수 선발관리지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해외파견 연구교수 선발 지침」. 「서울과학기

술대학교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선발에 관한 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 다.

- 제3조(적용례) ① 제11조제4항, 제21조제6항, 제31조제6항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연구교수부터 적용한다.
- ② 제8조제4호, 제18조제4호, 제28조제1항제4호는 2014년 9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연구교수부터 적용한다.
-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수의 합산은 2012년부터 기산한다.
-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연구교수는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20.>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3호, 2015.6.5.>

(대학회계 신설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63호, 2017.3.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연구교수는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697호, 2022.7.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연구교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727호, 개정 2022.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년제 연구교수의 의무 적용례) 제1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하반기 선정 연구교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34호, 개정 2023. 2.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교수 추가 선임 예시

학부(과)	재직 인원	연구교수 가능인원 (20% 이내)	2012년 소수	2013년 소수	2013년 소수누계 (최대 1)	2013년 추가가능 인원	2013년 추가선정 후 소수누계
○○학과	9명	1명	0.8 (9÷5의 소수)	0.8 (9÷5의 소수)	1.0	1년 기간 연구교수 1명	0 (1.0-1.0)

[별표 2] <개정 2015.6.5., 2017.3.2., 2022.7.15.>

연구비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금액	지원방법	비고
연구년제 연구교수 (산업체 1년)	6,000,000원	산업체에서 주 2일 이상전일제 근무 시 지원아타 기관 예산 지원을받을 경우 미지급	산학협력단회계 재원
연구년제 연구교수 (산업체 6개월)	3,000,000원	산업체에서 주 2일 이상 전일제 근무 시 지원타 기관 예산 지원을 받을 경우 미지급	산학협력단회계 재원
해외파견 연구교수 (1년)	13,000,000원	○ 파견 전 50% 지원 ○ 중간보고서 제출 후 50% 지원	대학회계 재원
해외파견 연구교수 (6개월)	6,500,000원	○ 파견 전 50% 지원 ○ 중간보고서 제출 후 50% 지원	대학회계 재원

^{*} 연구종료일로부터 재직연한 1년 미만인 교원의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 시 100% 지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간접비 계상 및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연구년제 연구교수의 연구지원비와 중복지원 불가

연구년제 연구교수 지원 신청서

구	분	=	국내() ,	/ =	국외()	/ 산업	체()) / 2	창업()
연구:	과제명	국	문										
(창업 추진	[기술·제품명)	영	문										
<i>አ</i> ነ :	청 인	소	속					7	딕 급		성 명		
건	ਲੇ ਦੇ	임용	용일					생	년월일				
(해당자	· 기 관 ·에 한함)	연수	국					(업체]관명 및 부서명)				
	신청액 에 한함)								은행계좌 체에 한함)	, (은행,	계좌번	, 호, 예	금주)
연 구	· 기 간				20			. ~ 2		. (개월)		
		<u>3</u>	등 류			기	간		연구기관	(연수국)	(연구비	비 고 미지원기	고 기관 등)
연 구 교 수 수 혜 사 항													
붙임	1. 연구 ² 2. 연구 ² 3. 서약 ² 4. 사업 ²	실적 서 1 ^년	목록 부.	1부		∥ 한	·함)						
	C	리와 [:]	같이	연구	구년자	에 연	구교-	수 지유	일 신청서·	를 제출합	니다.		
						20) .						
	신청인 : (인)								인)				
									학부(과)장 :		(인)
					대학	학(원)장 <u>대</u>	E는 청	앙업지원딘	장:		(인)
서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 7. 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7. 15.>

연구년제 연구교수 연구계획서

1. 인적사항

연구교수	소 속		직 급		성 명	
자 택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	관계 :)
연구과제명 (창업 추진/술제품명)	국 문 영 문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연구과제의 국제동향과 국내수준,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 등을 구체 적으로 기술
- * 일반적인 연구계획서와 같이 인용문헌 등을 포함하여 작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 * 연구과제의 범위,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개요 기술
- * 가능한 한 일반적인 연구계획서와 같이 인용 문헌 등을 포함하여 작성

4. 기대되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적용대상 기업이나 내용기재

5. 연구기관 (필요시 기재)

연 수 국							
	기 관 명	소재지					
주방문기관	연구초청자	성명) 소속부서 및 직위)					
	기 관 명	소재지					
기타방문기관	연구초청자	(성명) (소속부서 및 직위)					
연구기관의 주요 학술적 이론 및 기술	※ 연수할 기관 [©]	이 축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이론 및 기술내용을 기재					

6. 연구일정 (필요시 기재)

연구예정일	연구업무수행 내용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방문자

연구실적 목록

연번	구분	등급	역할	발표일	발표제목 (전시회명/작품명)	발표지명 (주최기관) (전시장소)	저자수	영향 지수	ISSN (ISBN)

< 작성요령>

- 1.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구분"란에는 저서, 논문, 특허, 산학협력, 창작작품 중 하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등급"란에는 아래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저서의 경우 국내저서, 국외저서 중 하나

논문의 경우 등재지, 등재후보지, SCI, SCIE, SSCI, AHCI, SCOPUS, 국외학술지 중 하나 특허의 경우 국내특허,국제특허 중 하나

산학협력의 경우 3억이상, 3억~1억, 1억~5천만원, 5천만원미만 중 하나

창작작품의 경우 국제특선, 국내입선, 단행본 시, 전문지 평론 중 하나

4. "역할"란에는 아래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저서의 경우 주저자, 공동저자 중 하나

논문의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중 하나

특허의 경우 주저자, 공동저자 중 하나

산학협력의 경우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중 하나

창작작품의 경우 주저자, 공동저자 중 하나

5. "발표제목"란에는 아래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저서의 경우 저서명

논문의 경우 논문명

특허의 경우 특허명

산학협력의 경우 수행기간, 지원금액, 지원기간

창작작품의 경우 전시회명과 작품명

6. "저자수"란에는 본인을 포함한 인원(산학협력의 경우 과제 수행인원)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소속:

직급 :

성명 :

상기 본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문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2. 나는 연구교수로서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3. 나는 승인 없이 연구기간 등 연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4. 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규정」에 따른 연구교수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5. 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규정」에 따라 연구교수 임용이 취소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겠습니다.
- 6. 나는 국외 체재를 하는 경우 국가의 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중도 귀국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년제 연구교수 활동보고서							
		성 명			(인)			
연구교	수	소 속			직급			
		연락처	전화		팩스			
od 7 akaili	nei	국 문						
연구과제명		영 문						
연구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방문기	관 및 접	촉연구자 (해당자	에 한함)			
방문기간 (기관	방문기관		방문자		연구업무수행 내용			
	(기관	· 보명, 소재지 등)	성명	부서명 및 직위	1	간구·납구구·장 대중		

연구성과 연구지도, 연구협력, 강연, 연구정보조사 등 연구활동내용 및 연구성과를 2페이지 이내로 건 여 주시기 바랍니다.	<u></u>]략하게	작성하
연구관련분야 기술수준과 동향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성과의 향후 활용방안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 어그런카드 1번		

붙임 연구결과물 1부.

((산업체 / 창업) 연구년제 연구교수 활동보고서							
		성 명			(인)			
연구교	수	소 속			직급			
		연락처	전화		팩스			
연구과제명		국 문						
(창업 추진기술 저	 품 명)	영 문						
연구기	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산업체 연	구활동 드	E는 창업 활동(해당	당자에 한	<u></u> 한함)		
근무기간 (기관		산업체명		명조 연구자 -	연구업무수행 내용			
	(기관	l명, 소재지 등)	성명	부서명 및 직위	1	21877090		

연구(창업)성과 연구지도, 연구협력, 강연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정보조사 등	연구활동내용 당	및 연구성과를	2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하
연구(창업)관련분야 7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연구(창업)성과의 향 혹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바랍니다.					
붙임 연구결과물 1 ³	 부.						

연구교수 연구비 사용내역서

(단위 : 원)

구분	금액	사용내역	비고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교 통 비			
교 육 비			
기 타			
합 계			

[별지 제9호서식]

	산업체 근무확인서								
	성명	한글			한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1	'		'			
	주 소								
	회사명								
근무업체	사업자번호								
	부서명								
⊐π≀l∻l	근무기간			~			.(개월)		
근무상황	주당 근무시간			,	시간				
	상기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 동안 당사로부터 일체의 보수(지원금)를 수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급부서 발급자 (인) 연락처									
	업체명 (직인)								

연구교수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연구과제명 (창업 추진기술제품명)							
(8월 주전 12 개념 8) 연구교수	소속 :	직급 :	성명	:			
변경항목							
변경내역	변경 전						
현경대학 	변경 후						
변 경 사 유							
연구비내역	연구비	원	집행잔액	언			
	위와 길	이 연구계획 변경을	는 승인 신청 합니다	구 .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 연구계획 변경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해외파견 연구교수 지원 신청서

어그리레버	국 문								
연구과제명	영 문								
11 원 Ol	소 속			7	익 급		성 명		
신 청 인	임용일			생	년월일				
연구기관	연수국			7]관명				
연구기간			20	. ~ 2	0	. (개월)		
	종 류		기 간		연구기관	(연수국)	(연구비	비 고 지원기관	등)
연 구 교 수			20 ~ 20						
수 혜 사 항									
연구비 신청액		원	지급은행계	좌	(\frac{7}{2}	, - - -행, 계좌	·번호, (
	계획서 1부 실적 목록 서 1부.		<u>1</u> .						
(T	기와 같이	카오	리파견 연구교 <i>4</i>	수 지유	^실 신청서	를 제출합	니다.		
			20 .						
					신청	이 :		(인)	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학부(과)장 :

대학(원)장 :

(인)

(인)

[별지 제12호서식]

해외파견 연구교수 연구계획서

1. 인적사항

연구교수	소 속		직 급		성 명	
자 택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성 명) 비상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관계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연구과제의 국제동향과 국내수준,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 등을 구체 적으로 기술
- * 일반적인 연구계획서와 같이 인용문헌 등을 포함하여 작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 * 연구과제의 범위,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개요 기술
- * 가능한 한 일반적인 연구계획서와 같이 인용 문헌 등을 포함하여 작성

4. 기대되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적용대상 기업이나 내용기재

5. 연구기관

연 수 국				
	기 관 명		소재지	
주방문기관	연구초청자	(성명) (소속부서 및 직위)	·	
	기 관 명		소재지	
기타방문기관	연구초청자	(성명) (소속부서 및 직위)		
	※ 연수할 기	관이 축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이론	및 기술내용을 기
연구기관의	재			
주요 학술적				
이론 및 기술				

6. 연구일정

연구예정일	연구업무수행 내용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방문자

7. 연구경비

^{*}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비 및 추가 소요경비 확보 부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체재지 도착 보고서

구분	내용 (상세히 기술)
소속	
직급	
성명	한글) 영문)
대한민국 출국년월일	
연구기관 도착년월일	
파견국 체재지 주소 (TEL)	
연구기관명 및 주소 (TEL) (FAX)	
전자우편(E-mail) 주소	
연구종사 부서명	
공동연구 관련인 성명	
소재지 관할 한국공관명	
연구비 지급 은행계좌번호	,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상기 본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착하고 연구에 종사하게 되었음	교 연구교수로서 위와 같이 해당 국가의 연구기관에 음을 보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연구교수 성명: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	ō

- ※ 본 보고서는 현지에 도착한 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15일 이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아울러 현지 주재 한 국공관에도 7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즉시 연락하고, 주재 한국공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보고서는 연구 및 체재비 송금 시 필요하오니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간 보 고 서

연구교수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글)			
연구과제명	(영문)			

- 1. 당초연구계획
 -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다.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 현재까지의 연구수행내용
- 3. 연구계획과 연구진행 대비(미진사유 등)
- 4. 기타사항

귀국보고서

연 구 교 수	소속			직급			성명			
어 그 기 제 대	(국문)									
연 구 과 제 명	(영문)									
지원(선발)년도		하면	년도 -							
연 구 기 관	연수국			기관명	!					
	연 구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9	일	
연 구 기 간	한국출병	발일자	20	년	월	일				
(출국 및 귀국)	한국도적	착일자	20	년	월	일				
	일시귀=	국일자	20	년	월	일 ~	20 년	월 월	일	

붙임 출국 및 귀국 확인서(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1부

위와 같이 연구교수 연구를 마치고 귀국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교수: (인)

학부(과)장: (인)

대학(원)장: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1. 연구일정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 추진내용을 주요일정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활동내용

가.	연구수행결과 (구체적으로 기술, 5페이지 이상)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별 첨"
	연구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 및 게재학술지(논문은 별도로 첨부함), 학술활동(국제회의
	"별 첨"
다.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과학기술 및 연구개발현황
라.	연구시 주요접촉인사, 향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상세히 기술)
마.	기타 활동사항

3. 앞으로의 연구계획

가.	연구· 관한			계획된	공동연구니	· 연수국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현려	가능성에
나.	향호	본	연구에	서 이루 [.]	어진 연구결	l과의 활-	동방안			

4. 연수국가 연구동향

가.	수국의 첨단 산업기술개발 실태(산업구조 및 동향 포함)	
나.	· - - - - - - - - - - - - - - - - - - -	
다.	구인력 육성 및 지원방안에 있어 도입하거나 반영하여야 할 프로그램 ! 특기사항	
라.	의사항 및 연수소감	

[별지 제16호서식]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지원 신청서

어그리레메	국 문									
연구과제명	영 문									
지 취 이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인	임용일				생	년월일				
연구기관	연수국		7]관명					
연구기간			20		. ~ 2		. (개월)		
		류 기 경			연구기관				,,) -	
	종 류		7] ?	간		연구기관	(연수국)		비 고 지원기관	등)
연 구 교 수	종 류		20 . ~ 20 .			연구기관	(연수국) 		•	등)
연 구 교 수 수 혜 사 항	종 류		20 .			연구기관	(연수국) -		•	등)
	종 류		20 .			연구기관	·(연수국)		•	등)
	종 류	원	20 .		•	연구기관	·(연수국)		•	등)

- 2. 연구실적 목록 1부.
- 3. 서약서 1부.

위와 같이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학부(과)장 : (인)

대학(원)장: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해외유명기관파견 연구교수 연구계획서

1. 인적사항

연구교수	소 속		직 급		성 명	
자 택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비 상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בָּ	<u> </u>)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연구과제의 국제동향과 국내수준,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 등을 구체 적으로 기술
- * 일반적인 연구계획서와 같이 인용문헌 등을 포함하여 작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 * 연구과제의 범위,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개요 기술
- * 가능한 한 일반적인 연구계획서와 같이 인용 문헌 등을 포함하여 작성

4. 기대되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적용대상 기업이나 내용기재

5. 연구기관

연 수 국		
	기 관 명	소재지
주방문기관 -	연구초청자	(성명) (소속부서 및 직위)
	기 관 명	소재지
기타방문기관	□역구조정자	(성명) (소속부서 및 직위)
	※ 연수할 기	관이 축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이론 및 기술내용을 기
연구기관의	재	
주요 학술적		
이론 및 기술		

6. 연구일정

연구예정일	연구업무수행 내용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방문자